

2014~2020년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2014~2020년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2014~2020년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 CONTENTS

<b>I.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소개</b>	<b>06</b>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07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07
3. 분쟁조정 절차	08
4. 관련 법령	10
<b>II. 분쟁조정 현황 및 분석</b>	<b>19</b>
1. 처리 현황(2014년~2020년)	20
2. 분쟁조정 유형별 · 내용별 현황	23
3. 분쟁조정 내용의 주요 쟁점	25
4. 분쟁조정 관련 상담 현황	27
<b>III. 분쟁조정 사례별 해설</b>	<b>29</b>
1. 개인정보	30
① 화재발생지 데이터(소방청)	30
②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국토교통부)	36
③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국토교통부)	40
④ 한국 연구자 데이터(한국연구재단)	46
2. 영업상 비밀 & 다른 법률상 비밀	50
① 공매도 잔고 데이터(금융감독원)	50
②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국방부)	56
③ 노동조합현황 데이터(고용노동부)	58
④ 전문예술법인 · 단체 데이터(예술경영지원센터)	62
3. 제3자 권리	66
①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66
②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69
③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76
4. 기타 사례	80
① 문화유물 3D 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80
② 한국근대지리정보(국사편찬위원회)	86
<b>부록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보세요</b>	<b>90</b>

## 발간사



세계는 정보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지능정보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혁신과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새로운 데이터 시장의 기회가 생기고, 민간·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중심에는 공공데이터가 있으며, 국민이 잘 쓸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여 모든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비공개정보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까지 7년간 20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청인인 국민과 제공자인 공공기관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이끌어 내고, 910건의 상담과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안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그간 연차별 분쟁조정 사례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위원회 출범 후 2020년까지 처리한 분쟁조정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등)을 분류하고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해설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사례별 쟁점의 판단기준과 조정경위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국민, 기업, 공공기관 간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사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신청인과 공공기관 간 간극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서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업의 요구와 공공기관의 법제도, 기술적 여건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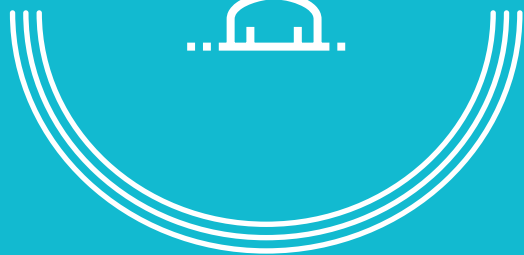
위원장 이 해 완



# I

---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



#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25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 처리 이외에도 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법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분쟁조정 절차

---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제공중단 하였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 가능함

#### ① 신청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② 신청사실 통보

-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함

#### ③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건담당자가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함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함

#### ④ 조정 전 합의 권고

-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권고함
-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함

#### ⑤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다수의 위원이 출석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 조정부 회의를 개최함
- 신청인·피신청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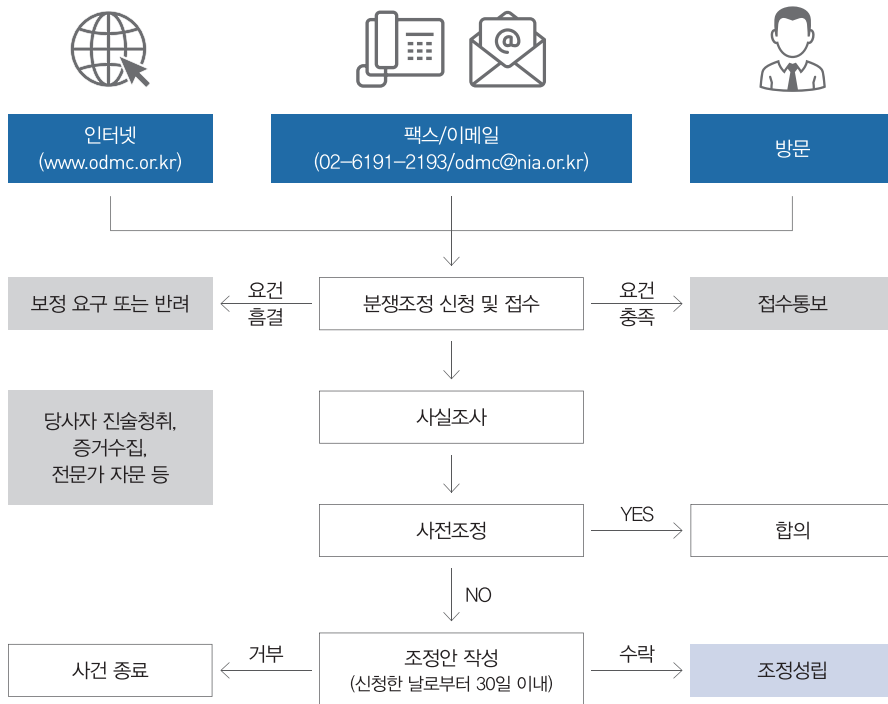
#### ⑥ 조정의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됨
-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거부로 간주함

## ⑦ 효력의 발생

-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4. 관련 법령

### 1) 공공데이터법 기본 원칙

#### 공공데이터법 기본 원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법 기본 원칙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면책)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공데이터법 기본 원칙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2)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절차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절차

###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절차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분쟁의 조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33조(조정거부 및 중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4조(조정절차 등)

-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II

---

# 분쟁조정 현황 및 분석



# 1. 처리 현황(2014년~2020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204건임. 이 중에서 반려·거부결정 및 신청취하 60건을 제외하고, 조정된 144건 중 사전조정 및 조정성립은 127건이며, 조정불성립은 17건임

반려결정(28건)은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한 적이 없거나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데이터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두로 들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식적인 제공거부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가 많음

거부결정(6건)은 사실조사결과, 신청대상이 공공기관이 업무상 수집·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나 기타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임

용어해설

- 반려: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경우
- 거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취하: 신청인이 분쟁조정절차 진행도중 조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연도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반려결정	3	0	5	1	7	7	5	28	
거부결정	3	1	1	0	0	0	1	6	
신청취하	1	4	7	1	4	5	4	26	
조정 결정	사전조정	1	7	5	16	8	20	22	79
	조정성립	9	7	3	10	6	4	9	48
	조정 불성립	0	3	5	3	5	1	0	17
<b>계</b>	<b>17</b>	<b>22</b>	<b>26</b>	<b>31</b>	<b>30</b>	<b>37</b>	<b>41</b>	<b>204</b>	

조정신청 취하(26건)는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임

조정결정(144건)된 내용 중, 사전조정 및 조정성립은 127건으로 88.2%를 차지하며, 조정불성립은 17건으로 11.8%를 차지함. 성립된 조정내용의 경우, 데이터 제공을 권고한 경우가 103건으로 71.5%,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중단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한 경우가 41건으로 28.5%를 차지함

사전조정(79건)은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르거나 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에 합의한 경우로, 최초 신청한 데이터 대비 조정된 제공범위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제공거부 처분의 경위를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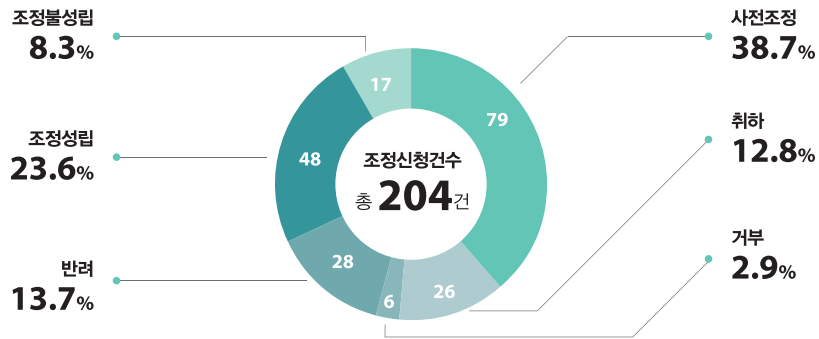
조정불성립(17건)은 피신청기관인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금융감독원, 대구광역시 동구, 대법원 등 8개 기관 12건)와 신청인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임(5건)

조정불성립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조정안에 따르지 않은 사유는 다른 법률상 비공개 대상(통계법, 형사절차전자화법 2건),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4건), 데이터 미보유 및 Open API 제공 어려움(4건), 개인정보(4건), 저작권(2건), 기타 데이터 악용우려(1건) 등임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7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2018년부터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조정안을 적극 수용토록 운영해 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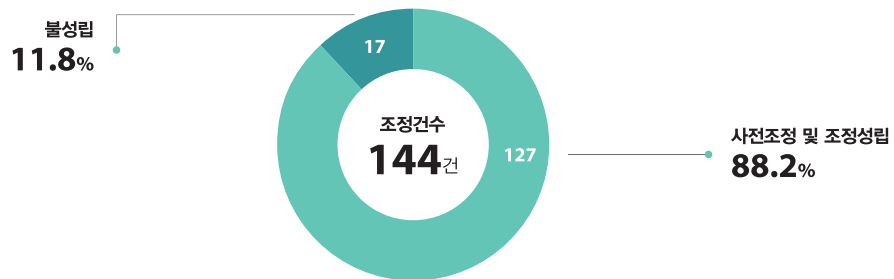
## 조정신청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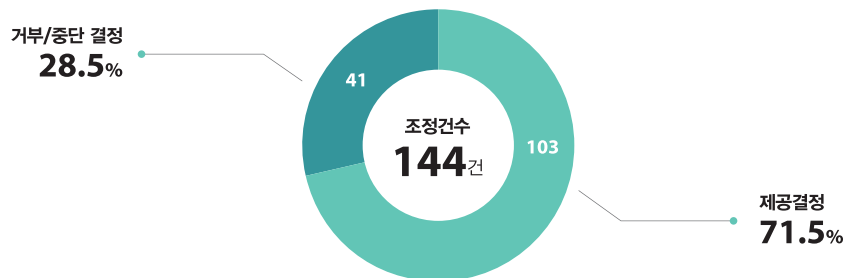
## 조정결정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제공결정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전체 조정완료건수(건) 중 거부, 반려, 취하를 제외한 실 조정건수

## 조정 불성립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2. 분쟁조정 유형별 · 내용별 현황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건을 데이터 유형별로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DB)가 146건(71.6%)으로 가장 많고, 저작물은 41건(20.1%), Open API 방식의 데이터 제공은 17건(8.3%)의 순으로 나타남

내용별로 분류하면, 단순 발간물과 기타 등 75건을 제외한 나머지 129건 중 사업자/경영정보가 30건(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약/의료/보건정보 23건(17.8%), 부동산가격정보 14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업자/경영정보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 신청인이 자동차정보를 여러 지자체와 소관업무 해당 주무부처에 요청하여 거부된 사건(16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복을 제거하면 의약/의료/보건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데이터 내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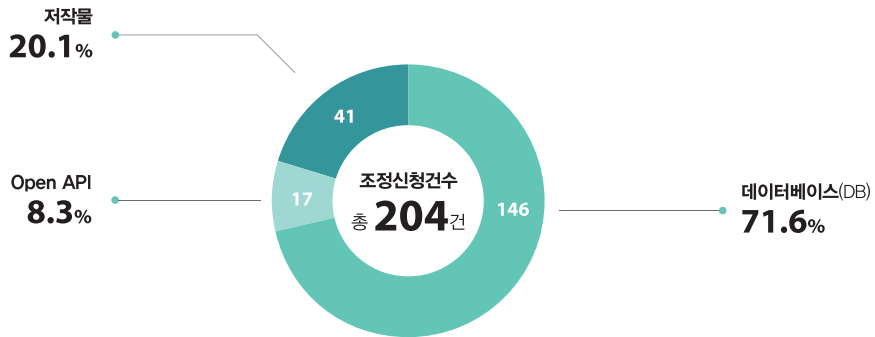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사업자/경영정보	0	2	1	17	4	5	1	30
의약/의료/보건정보	1	0	2	0	3	9	8	23
부동산가격정보	2	4	3	2	0	0	3	14
교통정보	1	0	3	0	1	3	5	13
자동차정보	1	1	1	2	3	2	2	12
학술정보	2	0	1	0	5	0	1	9
통계정보	0	2	2	2	2	0	0	8
건축정보	0	0	0	0	5	1	0	6
가격정보	3	0	1	1	0	0	0	5
사건사고정보	0	2	2	0	1	0	0	5
시험문제	0	3	0	1	0	0	0	4
기타*	3	1	5	5	5	8	12	39
발간물	4	7	5	1	1	9	9	36
<b>계</b>	<b>17건</b>	<b>22건</b>	<b>26건</b>	<b>31건</b>	<b>30건</b>	<b>37건</b>	<b>41건</b>	<b>204건</b>

\* 기타: 학교정보, 사회복지정보, 노동조합정보, 장애인고용현황정보, 공매도 잔고정보, 3D 데이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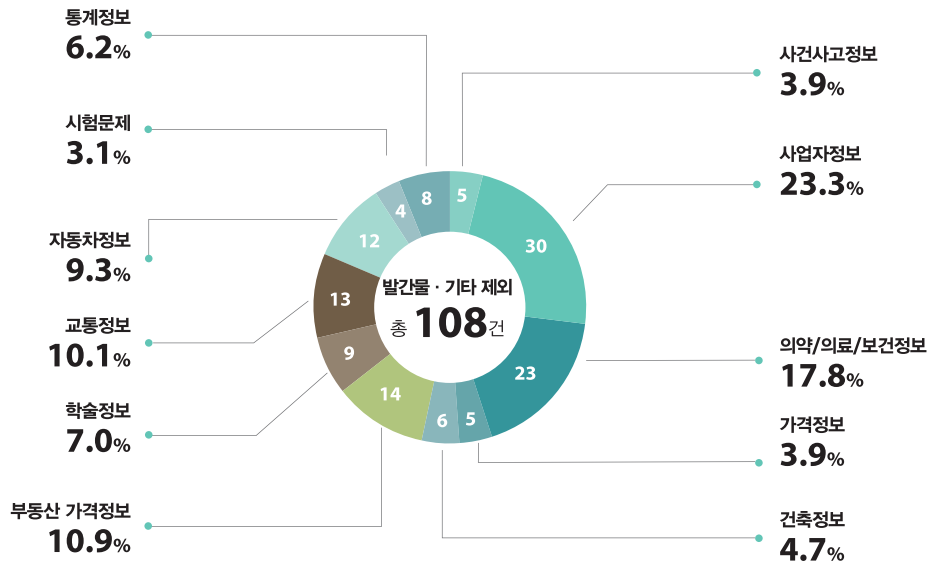
## 데이터 유형별 조정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데이터 내용별 조정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3. 분쟁조정 내용의 주요 쟁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내용의 주요 쟁점은 비공개대상정보 여부가 68건(3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3자의 저작권 포함 여부가 49건(24.0%)이며, 데이터 미보유 및 가공의무 부재가 28건(13.7%)을 차지함. 이 밖에 Open API 개발 및 수정이 12건(5.9%), 다른 법률상 규정 존재가 3건(1.5%), 기타는 44건(21.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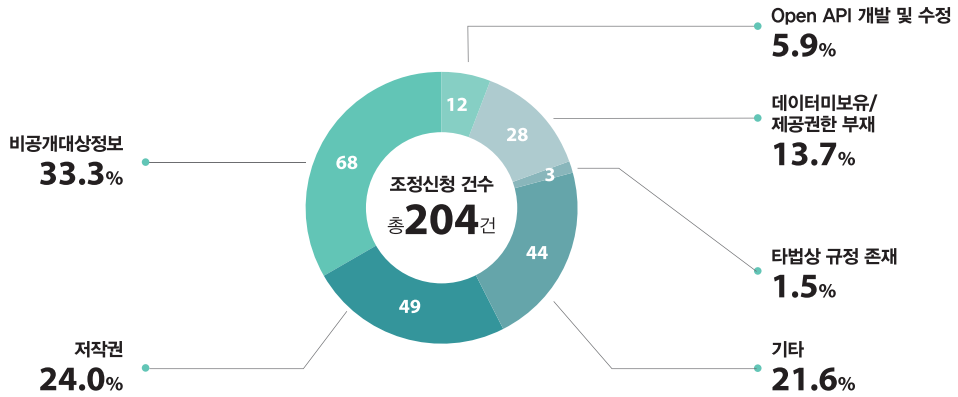
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여부가 27건(39.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정보 여부 23건(33.8%), 다른 법률(국세기본법, 형사절차전자화법, 통계법)상 비밀정보 여부 15건(22.1%), 기타 재산권 침해우려정보,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정보, 외교협상 정보 등 3건(4.4%)으로 나타남

특히 비공개대상정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대상이 아니라면 신청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7.2.8.선고 2006두4899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들어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정당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저작권의 경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이나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공공데이터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정당하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한 제공이 불가함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공하였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여 제공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음.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파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제공범위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제공결정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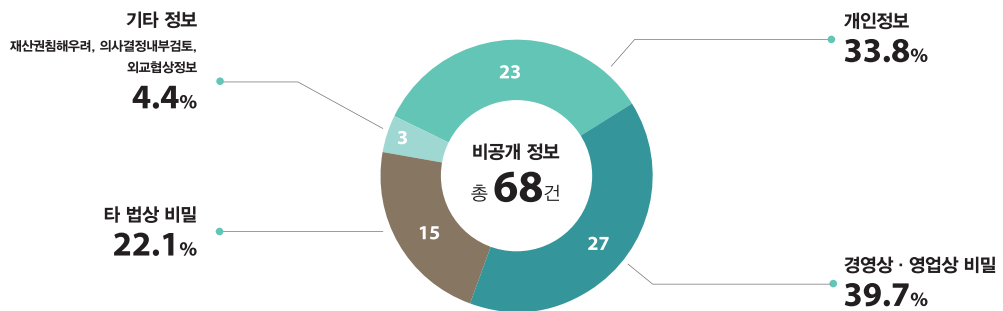
## 분쟁조정 쟁점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비공개대상정보 쟁점 현황

2014.01.01. ~ 2020.12.31. 기준



## 4. 분쟁조정 관련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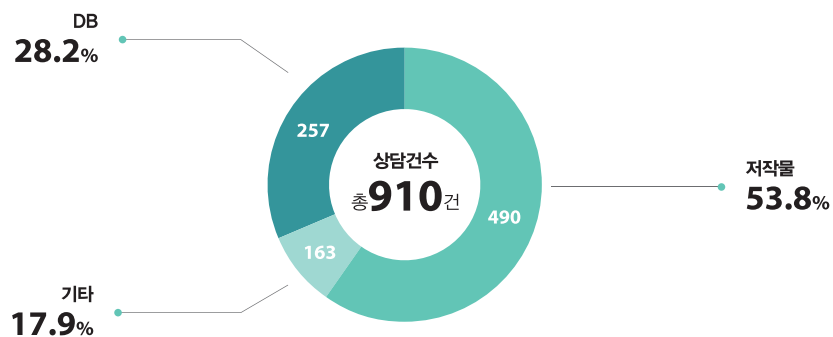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910건을 처리하였음. 상담 데이터 유형은 저작물이 490건(53.8%), 데이터베이스가 257건(28.2%) 순으로 나타남

상담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등 제공 관련이 556건(61.1%)으로 가장 많고, 분쟁조정 관련 118건(13%),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117건(12.8%) 순으로 차지함. 이중, 공공데이터 제공(556건)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판단이 428건(77%)으로 가장 많고,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이 42건(7.5%), 공공데이터 제공 후 문제(제3자 권리 등)가 37건(6.6%), 공공데이터 신청방법이 29건(5.2%), 기타 20건(3.6%)을 차지함

상담 대상은 공공데이터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이 740건(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170건(18.7%)에 해당함.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판단을 위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제공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형태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조건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공방안에 대한 문의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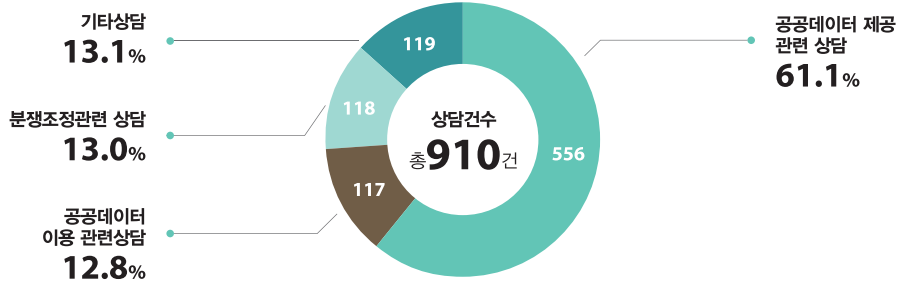
### 상담 유형별 현황

2014.01.01. ~ 20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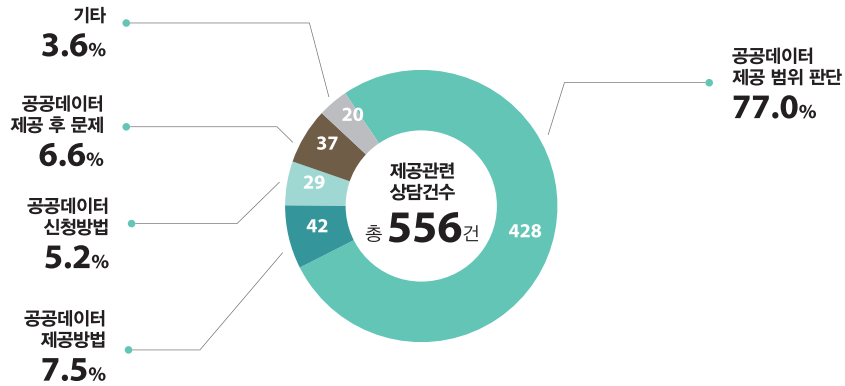
## 상담 내용별 현황

2014.01.01. ~ 2020.12.31.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 현황

2014.01.01. ~ 2020.12.31.



## 상담 대상별 현황

2014.01.01. ~ 2020.12.31.





# III

---

## 분쟁조정사례별 해설



# 1. 개인정보

## ① 화재발생지 데이터(소방청, 2018-012)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200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화재발생지\*

\* 상세주소(세부지번, 아파트 동, 호수 포함), 화재개요

▶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언론 기획보도

▶ 제공거부 사유: 신청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일일 화재 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소방관서, 주소(동단위), 화재발생일시, 피해액(천원), 사망자수, 부상자수

- 화재개요는 화재조사관이 특정 화재사고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으로서, 화재일시·발화지점·최초 목격자 진술, 현장조사 시 특이점 등이 포함되며 목격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발화대상 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 나. 쟁점

▶ 화재개요 데이터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다. 조정 결정

▶ 이 사건 데이터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대로 개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OO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함
  -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제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됨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라. 해설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의 의미

이 사건 조정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2020.12.22.개정)은 “개인에 관한 사항” 대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된다.

이 사건의 대상 정보인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해 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화재발생지 관련 데이터 213종 중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소유자 성별 및 나이, 점유자 성별 및 나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소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청구 대상 정보인 화재개요 데이터는 담당자 진술에 따라 목격자 등 관련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가능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며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즉,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제2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두어 비공개대상정보의 제공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제9조제3항, 제4항을 두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14조를 두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역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공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2항)

## ▶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의 제공가능성

2016년 6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령 내에서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기준, 활용범위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조치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으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는(이하 '비식별정보') 그렇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비해 그 제공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다.

비식별처리의 종류는 크게 식별자(Identifiers)에 대한 조치와 속성자(Attribute value)에 대한 조치로 나뉜다.

식별자(Identifiers)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으로, 삭제조치가 원칙이나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가능하다.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상세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번호 등 단일 또는 조합을 통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된다.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로,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속성자 역시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조치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식별조치 방법으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데이터범주화, 데이터마스킹 등이 있고 이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기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기술이 있으며,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 및 세부기술을 선택하여 활용해야한다.

또한 비식별조치 이후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식별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다양한 추론 기법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식별정보 또한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증가 등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식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 사안에서의 데이터 제공 방안 - 비식별조치 및 이용조건의 부과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 조정부는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기관의 우려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신청인과 공공기관 간 간극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비식별조치였고 아울러 이용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비식별조치는 기술적으로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추상성과 데이터 대체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00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같은 식으로 식별 정보 삭제도 추진하였다.

또한 이용조건으로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분석이라는 용도제한, 제3자 제공금지, 법적 책임 부담이 추가되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관련성이 있는 조정사건에서 분쟁당사자 간의 충돌보다는 창의적이고 원만한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공개대상 공공정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 판결)이 ①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②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로서의 식별성만을 비공개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소극적 데이터 개방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개인정보 관련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신청데이터	조정결과
2014-014	자동차 정비이력 정보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
2016-016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	· 신청 데이터는 연구자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 불가 · 다만, 향후 연구자 정보 수집 시 제3자 정보제공의 목적 및 제공항목 등 동의 조건을 다양화·세분화하여 연구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 권고
2017-028	자동차 등록번호(1~3자리) 및 차대번호(1~10자리)	·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되,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 * 국내 등록된 차량이 500대 미만인 경우로 합의
2018-012	소방청 화재발생지 정보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의 경우, 현행 제공 데이터(읍/면/동)에 공동주택의 건물명 및 동 데이터를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는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함 · 치환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고, 그외 조정안에서 정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018-014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
2020-012	자동차 등록번호별 차대번호	·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데이터 수집경위, 이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경우 데이터를 제공함 · 동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 구축 비용 중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 향후 다른 이용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편익에 관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 ②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국토교통부, 2018-014)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별 기본정보(API)\*

\* 차명, 차종종별명, 용도구분명, 최초등록일, 제작년월일, 색상, 취득가액, 주행거리, 제원 관리번호, 기존 영업용여부, 부활등록여부, 양도연월일, 사용연료명, 배기량, 변속기, 승차정원, 모델연도 등 17개 항목

▶ 신청 목적: 중고차 정보서비스 제공

▶ 제공거부 사유: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이력관리정보)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자동차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구분됨  
\*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정보, 자동차세 체납정보, 보험가입정보, 정비이력정보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

### 나. 쟁점

▶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다. 조정 결정

▶ 이 사건 데이터는 제공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피신청인은 2018년에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 라. 해설

### ▶ 자동차 등록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 즉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의해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자동차 등록증명원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고 있다면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의해 모든 차량에 자동차등록판이 부착 및 봉인되어야 함에 따라 본 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고 해당 번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동차등록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 정보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차량등록원부 제공 조건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정보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가능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데이터의 개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피신청기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데이터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하고 신청인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을 구비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진행되었다.

▶ **공공기관이 신청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제9조제1항제6호).

제6호의 경우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되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항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즉, 신청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6호는 사생활의 비밀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 데이터 제공거부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개인식별정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일반의 관행이나 학술적 경향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한 법리는 보다 실질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례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시대에는 개별 식별정보는 없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프로파일링 거부 및 대응권을 도입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판결 등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 ③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국토교통부, 2020-012)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대번호(17자리 전체) 데이터

※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송신하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응하는 차대번호 17자리를 제공

▶ 신청목적: 맞춤형 자동차 정보서비스 제공

▶ 제공거부 사유: 자동차 차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방항목에서 제외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종류(승용·승합·화물·특수)와 용도(비사업용·운수사업용·외교용)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함

•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한 아라비아 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작회사군·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 17자리로 구성됨

• 2019년 7월 피신청인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소유자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를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해당 API는 별도의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용

※ 정보주체가 본인인증 페이지를 호출한 후, 소유자 이름,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진행 후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기본(32개), 제원(70개), 정비이력(16개), 성능점검(56개) 등 총 174개 항목\*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그 중 차대번호는 1~8자리까지만 제공됨

※ 이용자는 첨부형 API를 신청할 때 총 174개 항목 중 제공 받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음

#### 나. 쟁점

▶ 자동차 차대번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판단

- 
- 다. 조정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기 동의를 받은 사실 및 데이터 관리·이용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즉각 중단함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법 제35조제1항),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중 향후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에 관한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르도록 함

---

**라. 해설** ▶ **자동차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되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차대번호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대 또는 차체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차체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차대번호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와 더불어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먼저 차대번호는 차량식별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불리며, 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국, 제조사, 차량의 종류, 차체 형상, 차량의 등급, 제동장치의 형식, 타각의 이상유무 확인 표시 등 차량의 특성, 생산연도와 생산한 공장 위치, 자동차 제작 일련번호를 포함하므로 특정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정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은 차량식별번호(VIN)를 차량 소유자의 신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sup>1)</sup>

본 사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차대번호를 제공할 경우 앞서 본 자동차 등록번호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동차 차대번호와 소유자명을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 성별정보, 비식별화된 사용본거지 주소, 등록관청과 등록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차대번호 역시 자동차 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개방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공공기관이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2항에 의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비식별화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은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고, 이전 소유자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차대번호를 제공받길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동意的 철학적 속성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처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누구도 이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sup>2)</sup> 따라서 차대번호 활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다면 공공기관은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제공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

1)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Opinion of the EDPS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ype-approval requirements for the deployment of the eCall system and amending Directive 2007/46/EC", 2013, p. 2.

2) Guido Calabresi,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p. 1092.

있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개방에 관한 분쟁을 다룬 사건에서도 조정위원회는 자동차 등록 번호 자체의 개인정보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 등록번호의 개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2018-014 사건).

아울러 현재 데이터가 제공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는 민간기업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차량 등록번호에 다른 정보들을 덧붙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대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차량 소유자나 이전 소유자 등을 식별할 수 있고 축적되면 과도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므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고, 이를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동의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당사자가 얻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동의의 목적에 따른 데이터의 처리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공공기관이 아닌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것이 옳다. 다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동의의 진정성과 사업자에 의한 동의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조정부부는 동의를 받는 서비스 플랫폼 등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드는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의 부담 주체

공공데이터법 제3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만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칙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은 무료다. 공공데이터를 생성, 관리, 제공하는 업무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고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국가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별도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다.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드는 전자기록 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둘째,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증설 및 유지보수 비용, 셋째, 제3자의 권리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이다. 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저작권이 포함된 정보 등 타인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이용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술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른바 특허적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즉, 신청인만이 향유하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 동일한 이익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API 연계를 위한 통신회선이나 프로그램 변경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청인과 공공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된다.

본 사안의 경우 차대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동의에 기반하여 차대번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된 기타 데이터들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면 국민의 편의 증진과 산업 발전 등의 공익적 효과도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도록 결정했다.

#### ▶ 이용조건의 부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은 공공데이터제공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및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로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으로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과 행정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공공기관을 돕는 역할을 찾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 공공기관의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일은 양측으로부터 조금씩 양보를 얻어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 공공기관은 신청인의 공공

데이터 오남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가장 우려하였다. 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 ② 동의 목적범위 내로 활용 제한, ③ 이용환경에 대한 감독권 유보, ④ 법률적 책임 확인, ⑤ 비용 부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을 부과하게 된 배경이다.

신청인은 해당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5항에 규정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건을 수용하였다.

까다로운 이용조건을 부담하면서 공공기관과 신청인 간에는 새로운 신뢰가 형성되고 소통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게 된다.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비용부담을 위한 세부적 협의과정에서도 기회는 늘어난다.

분쟁조정제도가 일도양단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신청인과 공공기관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조정위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용조건 부담부 공공데이터 제공이다. 법적 성격으로는 행정법상 부관부 행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한국 연구자 데이터(한국연구재단, 2016-016)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한국연구자정보 웹사이트(www.kri.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 연구자 데이터

▶ 신청목적: 학술정보서비스 시 저자 정보 \* 제공

\* 연구자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

▶ 제공거부 사유: 신청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한국연구자정보 웹사이트(www.kri.go.kr)를 운영하면서 연구자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구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이메일수신여부, 연구실전화번호, 재직여부, 임용일

\* 선택항목 : 핸드폰, FAX, 홈페이지주소, 소속정보(기관명, 분교/캠퍼스, 대학원, 학과, 세부전공, 직급, 임용일자 등), 국적, 거주국가, 연구분야, 학위, 경력, 자격, 수상, 연구실적(논문, 저역서, 연구비, 전시 및 작품발표, 학술활동, 기술이전)

#### 나. 쟁점

▶ 연구자 데이터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 연구자의 데이터가 웹페이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연구자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 조정 결정

▶ 이 사건 데이터에는 연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이 불가함

▶ 다만,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함

#### 라. 해설

▶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인지 여부

본 사안의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7조, 「학술정보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문언상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하나, 연구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연구자등록번호,

성명, 이메일, 소속, 연구분야, 세부전공명, 논문실적, 학술활동)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규율하지는 않으나,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그러므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의 객관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유나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웹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가 공공데이터의 제공대상이 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공공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와 공개의 형태와 공개 범위가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에 공개된 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을 살펴보고, 공개된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 형태와 해당 정보의 제공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범위가 변경되었는지, 또한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이 사건에서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구분야 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식별정보인 연구자등록번호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들은 연구자들의 연구사업지원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전문가, 시험출제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집 및 관리되고 있었으며, KRI 웹사이트 회원만 연구자 정보의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였고 그 중 일반회원은 연구자 회원의 일부 정보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신청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에 연구자들의 고유식별번호로 볼 수 있는 연구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정보처리자의 목적과 신청데이터의 공개 형태를 연구자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민간 학술 정보의 제공과 연구자들의 연구사업지원 및 사업수행과정에서의 행정상 편의 도모 등의 목적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신청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올바른 방법 및 절차**

KRI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시 민원사무처리,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한다는 안내와, 타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업무지원과 연구자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연구자는 회원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에 연구자 정보 수정 메뉴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제3자의 범위를 재단, 국가기관, 모든 기관(국가기관 및 민간 업체)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학술정보 제공 서비스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에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KRI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연구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조건과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일반 공중에까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명시하여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영업상 비밀 & 다른 법률상 비밀

### ① 공매도 잔고 데이터(금융감독원, 2018-009)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공매도 잔고 데이터\*

\* 종목명, 종목번호, 기준일, 참가자별 공매도 잔고 수량(참가자 인적 사항은 제외)

- ▶ 신청목적: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더 쉽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
- ▶ 제공거부 사유: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 신청데이터의 보유·관리 현황: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동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공매도자의 순보유 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음

\*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 공매도 잔고를 다량 보유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제1항). 매도자가 제출한 공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로 자동전송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가공하여 공매도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함\*\*

\*\* 종목별/업종별 공매도 잔고 현황,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현황,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종목 등을 엑셀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저작권을 근거로 영리적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나. 쟁점

- ▶ 신청데이터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다른 법령(또는 고시)에 정보공시범위가 규정된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 다. 조정 결정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다만,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함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음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라. 해설**

**▶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정보에는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자산이나 회계관련정보,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흔히 정보공개법에서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규정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나,

정보공개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범위를 넘

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해당정보가 사업활동과 무관하지 않는 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주장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도 정보공개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인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부정 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영업상 비밀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본 조항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법인등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 방지를 통해 영업의 자유를 보호할 이익과 ②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③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판단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등의 성격, 당해 법인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

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따라서 해당 법인이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경우에 비하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여부를 보다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 등이 활용함으로써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더라도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즉,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에 해당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법인등은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대통령령,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해 공공데이터제공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은 제17조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제1호)이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제2호)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은 대통령령이나 그 밖의 고시의 규정을 근거로 공공데이터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 **다른 법령(또는 고시)에 정보공시범위가 규정된 경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에 따라 공시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은 공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공시규정의 취지를 훼손하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하위법령으로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에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해당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상 위임을 받지 않은 고시 등의 하위법령에 정보공개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더욱이 본 사안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의하면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0이상인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시에 의해 공시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그 타당성 여부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수 없다면 해당 비밀의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공개로 인해 경쟁법인이나 일반인 등이 이를 활용하게 되어 정보주체인 법인등의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에게 보고되는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 제공시 기존 공시자료와 결합하여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제도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악용되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와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의하면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 데이터 제공 시 특정 매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이 사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대상인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개방 시기를 정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② 군매점 판매 상품 데이터(국방부, 2017-004)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PX(군 매점) 상품 관련 자료\*

\*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시중판매금액 대비 할인율, 판매수량 및 매출(전체/부대/지역별), 납품배송단위/보충요청 시 배송기간, 상품판매결제유형(ex. 카드, 현금, 전자화폐 등)

▶ 신청목적: 국군 장병의 가족 및 지인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편지, 사진, PX 상품교환권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 제공거부(신청반려) 사유: 신청데이터는 상품 납품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군 매점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상품명, 납품업체,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기존업체의 계약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매실적정보(판매수량 및 매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납품정보(시중가격, 납품가격, 할인율)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음

※ 신청데이터 중에서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규격(용량), 납품업체 정보는 국군복지포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일반인 회원 가입도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누구나 가입 후 열람할 수 있음

### 나. 쟁점

▶ 신청데이터가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다. 조정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라. 해설

▶ 국방부 군매점에서 군인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군 매점 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로서, 이 중 “상품명, 판매가격, 상품규격(용량), 납품업체명” 정보는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서 PX 이용자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국군복지포털에서 회원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할인율, 판매수량, 매출액 정보”는 국군복지단 내부에서 관련 직원 외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이를 공개하게 되면 해

당 납품업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익이나 매출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의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품명, 납품업체명, 상품규격(용량),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③ 노동조합현황 데이터(고용노동부, 2018-008)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데이터\*

\* 기업명, 사업장명, 노동조합명, 조합원 수(남성/여성/전체), 전체 근로자 수,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데이터 기준일자

▶ 신청 목적: ISO 26000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성 분석에 활용

▶ 제공거부 사유: 노동조합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

※ 피신청인은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ii)'11.7. 복수 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 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적절함을 주장

▶ 신청데이터의 보유·관리 현황: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현황에 대한 노동단체카드를 수합하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를 산출, 공표하고 있으며(통계법 제18조 승인통계), 지역별 노동조합명부를 작성하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이라는 발간물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음

\*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실물 책자로 배부하며, 외부에는 제공하지 않음

• 노동조합명부에는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데이터 중 기업명, 전체 근로자수, 데이터기준일자는 별도로 관리되어 있지 않음

#### 나. 쟁점

▶ 신청데이터 중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신청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에 해당하며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

다. 조정 결정 ▶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

---

## 라. 해설

### ▶ 노동조합 데이터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본 사안에서 제공신청된 데이터인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데이터는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연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왔고 지자체 등이 이를 개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사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 사안과 달리 공개되지 않는 노동조합관련 데이터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제공여부는 해당 법인등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최종결정되어야 한다.

### ▶ 다른 매체에 이미 공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보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비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야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 채 공개되었다면 일단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불특정 다수나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된 사실이 있다면,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 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통계자료로도 이용될 경우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는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 각종 의사결정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하고, 통계작성이나 통계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법인등의 비밀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계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동법 제31조제2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제33조는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법은 개인 또는 법인등의 비밀(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만 하면 통계법상의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공데이터법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의 예외가 되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범위가 통계법상 보호되는 법인등의 비밀보다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제공신청된 노동조합현황 데이터는 이미 공공기관의 업무상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통계법상 행정자료(동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통계자료로도 이용한 경우인데, 통계법에 따르면, 어느 경우이든 해당자료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등의 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동법 제2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노동조합현황 데이터는 이를 통계법상 통계자료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제공될 경우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통계법 제31조

통계법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3조제4호)

\*\*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3조제7호)

해당 규정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31조제2항)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i)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ii)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2항각호)

####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예술경영지원센터, 2019-012)

#####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데이터\*

\* 지정형태, 설립연도, 법적형태, 활동유형, 인력현황, 재정현황, 회원현황, 활동실적

- ▶ 신청 목적: 학술연구
- ▶ 제공거부 사유: 신청데이터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
- ▶ 신청데이터 관리·보유 현황: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sup>3)</sup>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설문 조사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홈페이지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본정보를 게시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발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쟁점

- ▶ 신청데이터가 통계법상 비밀로서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 신청데이터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다. 조정 결정

-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며, 그 중 법적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설립연도를 10년 단위로 범주화하며, 분류는 최초~1989년, 1990년~1999년, 2000년~2009년, 2010년~2019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중 세부실적은 제외한다.

##### 라. 해설

- ▶ 통계법상 법인등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한 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9년 주요사업 설명자료 참조

공데이터법 제4조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이의 제공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앞서 본 조정사례 2018-008 사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법상 비밀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은 통계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보급,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른 것이며(통계법 제2조),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시 이용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에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또한 동법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통계법상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이고(동법 제3조제3호),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을 말하므로(동법 제3조제4호), 통계자료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동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법인등의 비밀은 공공데이터법상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는 달리 별도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통계법상 통계자료의 제공에 의해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자원으로서 널리 보급, 이용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공공기관이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을 말하고(통계법 제3조제3호),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청장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동법상 통계작성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식별, 범주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통계법상 법인등의 비밀이나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자료의 제공시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31조, 제33조 등 참조) 개인이나 법인등의 비밀 보호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비식별, 범주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게 된다면, 해당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비식별, 범주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제공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내용 자체가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공개로 인해 경쟁법인이나 일반인 등이 이를 습득하여 활용하게 된 결과 해당 법인등의 영업이나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식별화 등을 통해 해당 정보의 보유주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비밀의 내용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된다면 영업비밀 자체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되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1)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고 2)설립연도 및 소재지 등을 범주화하였으며 3)일부 단체 및 세부활동 실적은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이 확보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 3. 제3자 권리

#### ①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한국감정원, 2019-001)

- 가. 사건 개요** ▶ 신청 데이터: 전국 아파트 평수별, 타입별 평면도 데이터 및 목록
- ※ 디자인업체가 보유한 아파트 평면도를 피신청인의 요구(평면도 색채 변경 및 로고 삽입 등)에 따라 디자인한 전자파일의 집합물
- ▶ 신청 목적: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
- ▶ 제공거부 사유: 외부 디자인업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 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저해 우려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한국감정원<sup>4)</sup>은 2009년 외부 디자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신청 데이터를 제작하였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테크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나. 쟁점** ▶ 신청 데이터 공개 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 제3자의 권리 포함 및 정당한 이용허락 여부(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

- 다. 조정 결정** ▶ 신청데이터의 성질상 공개 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
-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 제3자의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3자가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라. 해설** ▶ 공공데이터에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이 사건 사안과 같이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저작물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특히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경우에는 관련 판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하여 그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양이 많고 구체적 특성이 개별 데이터마다 다를 경우에 판례의 결론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단정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현 한국부동산원

이 사건 사안은 디자인 업체가 아파트 평면도에 색채나 무늬 등을 부가하여 가공한 데이터의 저작물성 유무가 문제가 된 것으로서, 유사한 쟁점과 관련하여 그 저작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판결)가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 다루어진 것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디자인 업체에서 기존의 아파트 평면도에 색채 또는 무늬 등을 가미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판결

아파트 평면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중략)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그리고 설사 그 저작물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디자인업체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신청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17조제1항제2호)로서, “제3자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안의 경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제공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공데이터의 저작물성이 부정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의 보호대상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표시’를 한 콘텐츠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해당 데이터 등에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보호가 문제 되지는 않았다.

▶ **공공기관이 라이선스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으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디자인업체로부터 단순히 라이선스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이러한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법에서 말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1)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취득’이란 공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라이선스를 받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아 처음부터 공공데이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②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거부(한국한의학연구원, 2020-004)

### 가. 사건 개요 ▶ 신청 데이터: 발간물 PDF 파일

- ▶ 신청 목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 ▶ 제공거부 사유: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반려  
※ 저작권권은 원 저자가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성명 표시권 침해 우려가 있음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이 사건 데이터는 대학교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저작권은 한의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음. 이 사건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웹페이지에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함”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음

### 나. 쟁점

- ▶ 공공기관 발간물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인지 여부
- ▶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제공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 ▶ 공공기관 발간물의 영리적 출판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조정 결정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현재 데이터에 표시된 저자 및 기여자의 성명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자가 성명표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신청인의 출판물(인쇄, 전자책)에 반영하여야 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안됨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함.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 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함

### 라. 해설

#### ▶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1)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

정정보,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자료를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DF 파일 중에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를 가능한 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공공데이터법 제24조제1항), 기계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PDF 파일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책자 형태로 간행한 발간물은 일반적으로 ‘공공저작물’에도 해당하나,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데이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데이터에는 저작물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두 가지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제17조제1항제1호), 다른 하나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제17조제1항제2호).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아니므로,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만 문제되었다.

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및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을 그 저작자로 보게 되므로, 해당 데이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모든 지분권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용역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여 발간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인 용역수행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모든 지분권을 원시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어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달라지게 된다.

계약상으로 공공기관이 단순히 이용허락에 대한 ‘이용권’만 가지고 그 저작재산권은 용역수행자에게 유보하기로 한 경우라면 용역수행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지만, 용역계약상 저작재산권을 공공기관에게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용역계약서에서 ‘양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저작재산권은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취지만 규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에는 저작재산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하기로 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론은 마찬가지로 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 등의 표시만 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용역수행자에게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오로지 저작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인 용역수행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제공을 요청하는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변형 또는 개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공기관이 그에 대한 저작권격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재산권만 보유하고 있어도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격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미 공표된 것이 많아 저작권격권 중 공표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그것은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저작물)를 이용할 경우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하여 이용하도록 적절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발간물의 경우에는 대개 발간물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고 특별한 변형이나 누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저작권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인 이용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를 통해,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공공기관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는 않아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부가되었다.

#### ▶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저작권을 이유로 제공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해당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제3자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규정이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관련하여, 공공데이터법은 제4조에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저작권법의 규정 가운데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제10조 등)이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제46조) 등은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등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중 어느 것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모순 또는 충돌을 일으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17384판결(정보공개법)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

### 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85143판결(공공데이터법)

자동차관리법(제69조제2항, 제3항) 및 그 시행령(제14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여부나 제공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저작물)를 활용함으로써 내부 직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의 기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내부직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과 관련된 사유는 공공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이므로 공공데이터법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제3자’

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출판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제28조제1항 각 호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

여기서도 저작권법의 규정 가운데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민들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러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이 간행한 발간물이라는 것만으로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발간물 데이터 이용 시 바람직한 출처표시방법**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PDF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그대로 이용하여 서적 형태로 출판한 후 시중에 판매할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구나 접근하여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모르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하지 않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록 해당 서적의 판권면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안에 “신청인이 (중간생략)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③ 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의 제공중단(한국한의학연구원, 2019-010)

---

#### 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010

- ▶ 신청 데이터: 발간물 4건(A, B, C, D)의 PDF 파일
- ▶ 신청 목적: 출판 및 판매
- ▶ 제공중단 사유: 2018년 신청인은 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출판해 왔으나, 2019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사유로 출판행위 중단 요구
  - ※ 피신청인 주장: 내부규정에 따르면, 피신청인 보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제공결정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출판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무단이용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사건 데이터 4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무단 전재 금지 및 인용 시 출처표시'를 명시하고 있음

---

#### 나. 쟁점

- ▶ 저작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의 의미(행정청의 처분,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및 공공데이터제공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가부
- ▶ 공공데이터제공중단 대상 해당 여부(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

---

#### 다. 조정 결정

- ▶ 사건 데이터 중 발간물 1건(A)의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중단 대상이며, 나머지 데이터 3건(B, C, D)의 경우 공공데이터제공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발간물 A를 제외한 나머지 3건(B, C, D)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함께 피신청인 홈페이지(URL포함)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 라. 해설

##### ▶ 저작물의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의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데이터가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해당 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때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으로 한정하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나,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의 기초가 된 신청인의 제공신청서 상으로는 그 활용목적이 '출판 및 전자책 제작'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데이터 제공결

정에 제공신청서 상의 활용목적에 따른 데이터 이용을 허락하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공데이터제공처분의 취소(또는 철회) 거부**

피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응하여 제공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0520판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음

**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34판결**

착오에 의한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착오자체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75판결**

특히 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대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음

▶ **공공기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제공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 1)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 2)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제2호)
- 3)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제3호)
- 4)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제4호)

이 사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자로부터 신청인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용행위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중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달리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저작물인 해당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내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유상계약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출판하여 사용함으로써 내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에서 위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공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제공중단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 취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내부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공공기관 직원의 실수로 데이터가 제공된 후 제3자의 권리포함 등의 이유로 제공중단된 경우,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가 이를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로 인해 신청인(이용자)이 입은 손해를





## 4. 기타 사례

### ① 문화유물 3D 데이터(국립춘천박물관, 2018-010)

**가. 사건 개요** ▶ 신청데이터: 석가여래좌상 2점, 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3호) 1점에 대한 3D 스캔 데이터

- ▶ 신청 목적: 실감형 전시 서비스 제공
- ▶ 제공거부 사유: 신청데이터는 준비 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제공 불가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신청데이터는 문화유물에 대한 3D데이터로, 해당 유물의 제작기법 및 조성 배경을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됨. 국립박물관인 피신청인은 소장하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름

**나. 쟁점** ▶ 신청데이터가 해당 보고서 발간 전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신청데이터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다. 조정 결정** ▶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

- ▶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함
  - ※ 피신청인은 문화재 스캔데이터의 특성상 고용량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위품·복제품 유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함
-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 제공기관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저작권법 제37조의2 참조)

**라. 해설** ▶ 신청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1)「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

보, 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제공대상의 예외가 2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고(제17조제1항제1호),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제17조제1항제2호).

▶ **공공기관이 신청 데이터를 포함한 보고서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는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원주 철불(가칭) 조사연구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로서 위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제공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신청인에게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면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 등 국민들에게 연구의 선점기회나 연구할 기회를 잃게 하므로 평등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개되기 이전의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한하며, 그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

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판결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함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

이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있는 그대로 스캔한 3D 데이터이므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신청인에게만 특별히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므로(제21조, 제27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외에 달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즉, 발간 전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공공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데이터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부에 제공을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공공데이터법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내용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조에서는 허가(승인)를 받아야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복제 규칙은 박물관미술관법 제10조에 따라 국립박물관이 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한 규칙이므로 공공데이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도 위 복제 규칙에 따라 허가(승인)신청을 하여 국립박물관의 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므로 위 복제 규칙은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품법 제10조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설치,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외 박물관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박물관자료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미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일 뿐 신청인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도 공공데이터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내부에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 규정은 법률이 아니므로 공공데이터법에 우선하여 해당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내부 규정의 상위법인 법률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다.

#### ▶ 3D스캔 데이터 제공 시 유의할 점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제17조제1항제2호).

3D스캔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함에 있어서, 3D스캔 데이터의 '대상'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을 '3D스캔하는 과정'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등이 부가되어 제3자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사건 데이터는 그 대상이 유물인데 유물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유물은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유물을 3D스캔하는 것은,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창작성 등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적 기계적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창작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으며, 설령 창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그 권리를 모두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유물(석가여래좌상 2점, 약사여래좌상 1점)에 대한 3D 데이터므로, 위품·복제품의 제작과 유통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용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여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 관련 조정사례

##### 대통령기록관의 해외 국민 선물 3D 데이터(국가기록원, 2017-030)

신청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외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3D 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조사 결과,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스캔한 3D 데이터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 ② 한국근대지리정보(국사편찬위원회, 2020-015)

- 가. 사건 개요**
- ▶ 신청데이터: 피신청인의 한국근대지리정보 웹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정보 중 지도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RAW DATA(데이터베이스 설계명세서 또는 설계파일 포함)
  - ▶ 신청 목적: 학술 연구
  - ▶ 제공거부 사유: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데이터로 수정·갱신 중이며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
  - ▶ 신청데이터 보유·관리현황: 피신청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를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역사자료를 선별하여 원문이미지, 국문번역자료, 해제 등 총 104종 880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 중임(<http://db.history.go.kr/>)
  - 신청데이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 메뉴인 한국근대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정보는 시범서비스 중이고, 데이터가 수정·갱신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음
-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지도(GIS 베이스맵)에 기반하여 특정 장소(교육시설, 군사시설, 사법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시설명, 위치번호, 도엽명(지도이름), 축도년도, 발행년도, 지도소장처 등)를 제공

- 나. 쟁점**
- ▶ 신청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 조정 결정**
- ▶ 피신청인의 주장은 공공데이터법상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데이터 및 설계명세 파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함
  -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목적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는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시점 및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여야 함

**라. 해설**

▶ **신청데이터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처분은 공공데이터법상 정당한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이미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데이터법 제17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6조제1항은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품질로 인하여 이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법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도록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수정, 갱신 중임에 따라 2021년에 데이터를 개방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수정, 갱신 중이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는 위 공공데이터법 제17조가 정한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수정, 갱신 중임에도 이미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제공을 거부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공공데이터 이용조건 설정방법 및 위반 시 문제**

피신청인이 역사 전문 국가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점과 2021년에는 수정, 갱신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 이므로 현재 제공하는 데이터와의 사이에서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동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는 데이터의 제공 시점과 오류 가능성을 밝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합의한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28조의 ‘제공중단’ 조치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것이나, ‘제공중단’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회의 제공행위만으로 이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킨 후에는 ‘제공중단’을 거론하는 것이 성격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용조건 위반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데이터 설계명세 파일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요구사항분석”, “개념설계”, “논리설계” 및 “물리설계” 단



계를 거치며, 각 단계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명세서로 작성, 관리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적 구현과 운영에 활용된다.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그 구현 과정에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명세서에 포함된 각종 정보와 명칭들이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정보는 시스템 보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해커는 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유추하고 유추된 구조를 활용하여 목표한 데이터의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해커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 탈취는 보다 용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서도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DB명과 DB table 명세 공개에 대한 청구를 본 해설서와 같은 취지로 기각한 바가 있다.

## 관련사례

### 서울특별시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13.10)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를 공개 청구

운영 중인 시스템의 DB table의 공개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 등에 이용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

이와 같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해킹 등 외부 침입을 통한 데이터 탈취, 데이터베이스 임의 조작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공개하고자 할 때에

는,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명세서가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발췌된 데이터의 명세서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유추할 수 없도록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기타 시사점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에게 완전무결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가급적 국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충실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어렵사리 이용조건을 부기해 합의에 도달한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이용조건 미준수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현행법상으로는 안 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 록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보세요**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92

- 1)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 2)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 3)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4)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 하나요?
- 5)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 6)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 7) 우리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디.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 8)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 공공기관 발간물에 대해 제3자에게 출판하도록 허락해주었는데, 이후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나요?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101

- 1)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 2)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 3)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4)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5) 공공데이터 이용 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3. 분쟁조정 관련

106

-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2)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3) '분쟁조정'이라고 하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 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5)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4. 기타

108

- 1)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2)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 하나요?
- 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데이터에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입력한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대상에 해당 하나요?
- 4)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 Q1

###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데이터 중 전자화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Q2

###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라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포함되고 권리자로부터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Q3

####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공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가 함께 존재하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제공불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 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Q4

###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해당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위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귀속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설서 70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등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에 관한 전문기관에 문의하신 후 제공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생략)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Q5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발간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발간물의 내용상 분리하는 것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체로서 제공거부할 수 있습니다.

## Q6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므로,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게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책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7

우리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  
다.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가공비용을 부담하는 등 공공기관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조정사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6-015사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토록 조정(사전조정)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5-012, 2017-028, 2018-012사건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가공 및 치환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8-020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가공(데이터 추출 및 오류 정제 등)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가공을 위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Q8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되,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17 조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제공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자에게 해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 허락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여, 권리자가 반대한다면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을 참고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공공기관  
발간물에 대해  
이미 제3자에게  
출판하도록  
허락해주었는데,  
이후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로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제공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저작권법상 출판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이용허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 Q1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Q2

####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용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과 함께 이용요건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가 되는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의로 상업적 이용금지와 같은 조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Q3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에는 신청목적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기입된 신청목적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신청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추후 법 제28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공중단 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Q4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은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악용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의 범위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5

공공데이터  
이용 시  
출처를 표시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제시한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2)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공공기관의 조건 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상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조정사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8-017사건

출판 및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법령질의회신사례집 파일을 제공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신청인에게는 데이터 이용 시 해당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사전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20-004사건

출판 및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발간물 파일을 제공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신청인에게는 데이터 이용 시 해당 데이터가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함,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함

### 공공저작물 출처 표시 의무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중 발췌

####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분쟁조정 관련

#### Q1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거부되었거나 데이터 제공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http://www.odmc.or.kr))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2조(분쟁의 조정)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Q2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저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주세요. 전화(02-6191-2064) 혹은 이메일(odmc@nia.or.kr)로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Q3

‘분쟁조정’이라고 하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공거부 통지서나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Q4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 Q5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는 법적 효력 없이 모두 종료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 Q1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는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중단결정을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법 소관 부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36조(면책)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Q2

###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므로 공공기관 업무를 위하여 이미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8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법

#####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Q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데이터에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입력한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대상에 해당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정보만이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다른 기관이 수집·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공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3자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데이터를 수집·입력한 기관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조정사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4-003사건

네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국도로이정표 정보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입력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시스템에 통합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무부처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 제공하도록 권고함(조정성립)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7-018사건

자동차정비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통계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정보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입력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조정불성립).

## Q4

###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이지만 정보공개 대상과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은 중복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 공공데이터법

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설 집필진

개인정보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분쟁조정위원회 3기, 4기 위원
영업상 비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분쟁조정위원회 2기, 3기 위원
제3자 권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쟁조정위원회 3기, 4기 위원장
기타 3D 스캔데이터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 3기, 4기 위원
원천DB 및 설계명세	이길연	법률사무소 호크마 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 3기, 4기 위원
	성원경	KISTI 지능형인프라기술연구단 단장 분쟁조정위원회 4기 위원

## 2014년~2020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인쇄일	2021년 4월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기획편집	사무국 정종열(NIA 연구위원) 유지혜(NIA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오지은(NIA 책임연구원)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3층
전화	02-6191-2064
디자인	디자인메카

※ 본 해설서의 전자파일 및 분쟁조정사례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http://www.odmc.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해설서에는 집필진 및 제작사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2020년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 해설서



공공데이터정책과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TEL: 044-205-2803  
<https://www.mois.go.kr>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TEL: 053-230-1114  
<https://www.nia.or.kr>



서울특별시 중구 창계천로 14  
TEL: 02-6191-2064  
<https://www.odmc.or.kr>

비매품/무료



9 788984 836051  
ISBN 978-89-8483-605-1